경상북도 도보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950호 2005. 8. 1 (월)

선	기 관 의 장
람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제2881호) ····· 3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제2882호) ····· 6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제2883호) ····· 11

○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제2884호) ····· 16

■ 규 칙

○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제2513호) ····· 19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제2514) ····· 24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제2515호) ····· 35

○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제2516호) ····· 56

■ 훈 령

○ 경상북도지방행정혁신전략회의등운영규정(제1236호) ····· 58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및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제1237호) ····· 64

■ 고 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현황고시(제2005-221호) ····· 96

회 람								

발 행 : 경상북도 편 집 : 공보관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제2005-222호) ····· 97
○ 보호수의지정고시(제2005-223호) ····· 99
○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고시(제2005-224호) ····· 100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제2005-225호) ····· 101
○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제2005-226호) ····· 102
○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고시(제2005-227호) ····· 103
○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고시(제2005-228호) ····· 104

■ 공 고
○ 전기공사업등록업체행정처분공고(제2005-383호) ····· 105
○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2005-386호) ····· 106
○ 등록취소공고(제2005-387호) ····· 107
○ 측량업등록공고(제2005-389호) ····· 108

시 군

■ 고 시
○ 경주도시계획시설(흥무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경주시고시제2005-52호) ··· 109
○ 양남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경주시고시제2005-53호) ····· 112
○ 서면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경주시고시제2005-54호) ····· 114

■ 공 고
○ 공인신조공고(경주시공고제2005-779호) ····· 115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공고(경산시공고제2005-424호) ····· 116
○ 이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안” 공람공고(청도군공고제2005-197호) ····· 117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6호) ····· 118
○ 하천점용허가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7호) ····· 119

■ 공 고
○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9호) ····· 120
○ 도로사용폐지에관한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0호) ····· 121
○ 공시송달공고(연천군공고제2005-269호) ····· 123

경 상 북 도

조 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2881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 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주소방서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법흥동 32-9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1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성내동 48-23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령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	울진군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포항남부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서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

- 명 칭 : 포항남부소방서
- 위 치 : 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번지
- 관할구역 :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 포항소방서 명칭, 관할구역 조정

- 포항소방서 → 「포항북부소방서」로 명칭변경
- 관할구역 : 포항시 일원, 영덕군 일원, 울릉군 일원
  →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2882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3,883”을 “4,021”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21”을 “1,836”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1,925”를 “2,048”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집행기관의 정원 중 90명은 한시정원으로서 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 14명(4급1, 5급4, 6급5, 7급4)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 업무 추진인력 4명(5급1, 6급1, 7급1, 기능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4급1, 5급3, 6급3, 7급5, 기능10급2)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4급1, 5급4, 6급5, 7급6, 기능10급1) 및 전국체전기획단 운영인력 15명(4급1, 5급3, 6급3, 7급6, 8급1, 기능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경연구소 4명(5급1, 6급1, 7급1, 8급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운영인력 22명(4급1, 5급2, 6급5, 7급2, 8급4, 연구사4, 기능9급3, 기능10급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021	1,137	93	2,404	387
정무직		1	1			
일반직	소 계	1,308	934	55	75	244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3	42	7	5	9
	5 급	245	196	8	17	24
	6 급	445	320	18	27	80
	7 급	469	333	20	22	94
	8 급	78	37	1	3	37
별정직	소 계	33	22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13	7	2	4	
	7급상당	7	6		1	
	8급상당	4	2	1		1
연구직	소 계	196	2		161	33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68	1		135	32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지도직	소 계	28			25	3
	지도관	7			6	1
	지도사	21			19	2
소방직	소 계	2,048	47		1,99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39	9		30	
	소방경	76	7		69	
	소방위	141	11		130	
	소방장	278	12		266	
	소방교	574	9		565	
	소방사	923	1		922	
기능직	소 계	363	127	33	97	106
	6 급	11	5	1	3	2
	7 급	32	18	3	5	6
	8 급	56	12	6	17	21
	9 급	117	36	4	37	40
	10급	147	56	19	35	37
교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2006년도 개최되는「제87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코자 하는「전국체전기획단」운영 인력과

○ 소방력보강계획에 의거 설치되는 포항남부소방서, 일월 파출소 등 소방관서 운영 및 구조구급 직제신설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3,883명 → 4,021명(증 13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1명 → 1,836명(증15)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25명 → 2,048명(증123)

○ 직급별 순증내역

- 일반직(14) : 4급 1, 5급 3, 6급 3, 7급 6, 8급 1
- 기능직(1) : 10급 1
- 소방직(123) : 소방정 1, 소방령 12, 소방경 16, 소방위 16, 소방장 19, 소방교 30, 소방사 29

○ 분야별 증원 및 직급조정 내역

- 전국체전기획단 신설 : 15명('06.12.31까지 한시)
  - 4급1, 5급3, 6급3, 7급6, 8급1, 기능10급1
- 포항남부소방서(119구조대, 일월파출소 포함), 의성소방서 봉양파출소·의흥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 : 95명
  - 소방정1, 소방령2, 소방경4, 소방위6, 소방장14, 소방교35, 소방사33

•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포항북부 · 경주 · 안동 · 구미소방서) : 24명

- 소방령 4, 소방경 4, 소방위 8, 소방장 8

• 소방헬기 구입에 따른 조정 · 정비사 증원 : 4명

- 소방경 1, 소방위 1, 소방장 2

•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조정

(과장,담당직급 일원화, 화재조사요원 간부화, 교관단장)

- 소방령 6, 소방경 7, 소방위 1, 소방장△5, 소방교△5, 소방사△4

○ 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6,506백만원 정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액인건비	산 출 내 역 (월 소요액×12월×인원)	비 고
계	6,506,544	138			
4급	58,188	1	58,188	4,849×12월×1인 = 58,188	
5급	147,096	3	49,032	4,086×12월×3인 = 147,096	
6급	113,760	3	37,920	3,160×12월×3인 = 113,760	
7급	180,432	6	30,072	2,506×12월×6인 = 180,432	
8급	25,764	1	25,764	2,147×12월×1인 = 25,764	
기능 10급	20,520	1	20,520	1,710×12월×1인 = 20,520	
소방정	64,644	1	64,644	5,387×12월×1인 = 64,644	
소방령	769,392	12	64,116	5,343×12월×12인 = 769,392	
소방경	944,064	16	59,004	4,917×12월×16인 = 944,064	
소방위	871,104	16	54,444	4,537×12월×16인 = 871,104	

구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액인건비	산출내역 (월 소요액×12월×인원)	비고
소방장	985,872	19	51,888	4,324×12월×19인 = 985,872	
소방교	1,305,720	30	43,524	3,627×12월×30인 =1,305,720	
소방사	1,019,988	29	35,172	2,931×12월×29인 =1,019,988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2883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상북도세”를 “경상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을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6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를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1항, 제14조본문, 제15조본문,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32조 내지 제3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1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동조동항제3호 및 제11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6조중 “민법”, “의료법”을 각각 “「민법」”, “「의료법」”으로 하고, 제7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고, 제9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제10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 “주택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규칙」”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 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으로 하고, 제21조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제26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제27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29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인용법률 개정 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을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시설세를 면제함.(제13조제1항제1호)

나.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제13조제1항제3호)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2884호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로 하고, 동조제2호가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제2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분리 개정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으로 인한 한글의 영문표기법이 변경

○ 이에 따라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 명칭 및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의 “경북” 영문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 제3조 내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변경

○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의 KYONGBUK를 GYEONGBUK로 변경

규 칙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규칙 제2513호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②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 2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에관한법률시행령”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및「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북우수농산물표시대상품목

□ 표시대상 품목수 : 8류 248품목

(농산물류 112, 과자·당류 8, 조미료류 24, 음료류 24, 주류 18, 축산 28, 수

산 24, 기타 10)

제2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기타의 식물로서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12 품목)
1 곡물·두류	1. 곡 물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2. 두 류 콩, 팥, 녹두, 낙화생,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2 야 채 류	송이, 콩나물, 녹두나물, 무, 당근, 고구마, 감자, 우엉,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치, 파, 죽순, 오이, 가지, 박, 호박, 토마토, 고추, 냉이, 자소, 생강, 산초나무, 파이슬리, 고사리, 고비, 머위, 건고추, 마늘, 풋콩, 표고, 동아, 인삼, 피망, 부추, 아티쵸크, 벨후추, 미나리, 토란, 방울토마토, 앤다이브, 마른취나물, 케일, 쑥갓, 깻잎, 신립초, 치커리, 양파,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팽이버섯
3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김치, 야채병조림, 야채통조림, 과실병조림, 과실통조림, 잼, 야채주스, 건시, 장아찌, 단무지, 동치미, 깍두기, 야채스프, 건포도, 가공인삼, 마분말
4 두 부 류	두부, 두유
5 가공곡물류	국수, 당면, 도시락밥, 빈대떡, 냉면, 만두피
6 맥 아	엿기름
7 과 실 류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딸기, 호도, 수박, 참외, 살구, 밤, 자두, 대추, 잣, 조롱수박, 복수박
8 식 물	장미, 백합, 접목선인장, 카네이션

제3류 : 과자와 당류

상 품 군	상 품 세 목 (8품목)
1 과자와 빵	1. 과자 당과, 과일칩, 야채칩, 한과 2. 빵 밀빵, 사과빵
2 당 류	물엿
3 떡	떡

제4류 : 조미료류

상 품 군	상 품 세 목 (24품목)
1 장 류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2 화학조미료	멍게조미료
3 식 초 류	과일식초, 마늘식초
4 향 신 료	고추가루, 후추가루, 겨자가루, 산초가루, 계피가루, 깨소금, 육계가루, 식품향료, 마늘가루, 생강가루, 버섯가루, 양념용스프, 고추씨기름, 산초엑기스, 마늘기름
5 염	식염, 맛소금

제5류 : 차류와 무주정 음료

상 품 군	상 품 세 목 (24품목)
1 차 류	녹차, 차의 잎, 오가피차, 석창포차, 구기자차, 맥엽차, 인삼차, 케일차, 영지차, 대추차, 도라지차
2 청량음료 및 과실음료	과일시럽, 과실액, 과실분말, 사과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인삼분말, 인삼주스, 인삼엑기스, 식혜, 과실저알콜탄산음료, 마늘음료, 도라지넥타

제6류 : 주 류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8품목)
1 일반주류	청주, 탁주, 약주, 증류소주, 법주, 인삼주
2 양주, 맥주 및 과실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포도주, 사과주, 머루주, 매실주, 유자주
3 중 국 주	고량주, 오가피주
4 약 미 주	약미주, 보명주, 송엽주

제7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 유지(공업용 유지 제외한다), 유제품 및 동물 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상 품 군	상 품 세 목 (28품목)
1 식 육	우육, 돈육, 계육, 인조육, 양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2 란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종란
3 내 장 품	햄베이컨, 소세지, 육포, 축산물의 병조림, 축산물통조림 축산물이유식, 햄버거, 비프스테이크, 돈까스, 염소엑기스
4 식용 및 공업용 유지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제8류 :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24품목)
1 어 개 류	연어, 방어, 가자미, 꽁치, 잉어, 은어, 전복, 오징어, 문어, 게, 성게 알젓, 성게, 우렁쉥이
2 해 초 류	한천, 다시다, 미역, 청각, 톳
3 가공수산물	수산물통조림, 수산물병조림, 생선묵, 수산물이유식, 건제어개류, 훈제어개류

제31류 : 농업·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류의 것은 제외한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10품목)
1 미가공 곡물	들깨, 참깨
2 종자류	꽃구근
3 신선한 과실류	멜론, 앵두
4 식 물	묘목, 생화
5 식용 어개류	고등어
6 잠 종	누에, 잠종(蠶種)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분리개정되고,

○ 2004. 11. 4.자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우수농산물 지정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의결되어,

○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관계법령 명칭 개정 및 지정대상품목을 확대코자 함.

2. 주요내용

법령의 분리개정에 따른 법령명칭 개정 및 우수농산물 지정대상품목 확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규칙 제2514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을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전국체전기획단”으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을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으로 한다.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2. 개·폐회식 공식행사 및 의전
3. 전국체전 예산심의 및 확보
4. 전국체전집행위원회 구성·운영
5.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
6.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정비
7. 경기장 단장 및 성화시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8. 선수촌 등 숙박시설 관리 및 배정

9. 전국체전 홍보사업 개발추진

10.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11. 기념품 제작 및 구입

12. 교통 및 수송대책 수립

제36조중 제1항 및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 단, 포항북부·경주·안동·구미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단, 영천·상주·의성·성주·칠곡·울진소방서의 방호구조과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④방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각종 훈련

3.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4. 세입 및 소방사범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6. 산화 및 풍·수·한·설해 등 천재시 소방지원 대책

7.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완비촉진과 지도

8. 건축·위험물 관련 민원서류 조사처리

9.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점검업 등의 등록 및 지도

10.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신청·신고· 변경 허가 및 지도

11. 화재예방에 관한 민원서류 조사 처리

12. 기타 화재예방 등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⑤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 구조·구급, 재난정보 접보·처리 및 전파

2. 화재, 구조·구급, 재난 지령 및 상황보고

3. 무선통신, 전산장비 설치·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가스·독극물 재해 및 선박·항공기·지하철·방사선 등의 특수재해 소방대책

5. 구조구급 업무의 기획 및 조사

6. 구조대책 구급기술의 연구·지도

7.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시 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8. 구조구급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정비

9. 구조·구급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⑥방호구조과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소방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7조 관련)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 소방서	덕 산 파출소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동빈동, 용흥동, 죽도1동 일원
	두 호 파출소	포항시 북구 두호동 295-8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두호동, 우현동, 창포동, 항구동, 학산동, 대신동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 소 방 서	흥 해 파출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123-1	포항시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일원
	영 덕 파출소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22-9	영덕군 영덕읍, 달산면, 지품면 일원
	강 구 파출소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5-33	영덕군 강구면, 남정면 일원
	영 해 파출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563-67	영덕군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축산면 일원
포항남부 소 방 서	일 월 파출소	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	포항시 청림동, 일월동, 인덕동, 동촌동, 동해면 일원
	제 철 파출소	포항시 남구 괴동 920-5	포항시 송정동, 송내동, 괴 동, 장흥동, 호 동, 대송면, 연일읍 생지리, 괴정리, 동문리, 오천리, 중명리, 중단리, 택전리, 인주리, 우복리 일원
	해 도 파출소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31-10	포항시 상도동, 해도동, 송도동, 죽도2동, 대도동 일원
	효 자 파출소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 64	포항시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 동, 득양동, 학잠동,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연일읍 유강1.2리, 자명1.2리, 학전리, 달전리 일원
	구룡포 파출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90-30	포항시 구룡포읍, 대보면 일원
	오 천 파출소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202	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일원
	울 릉 파출소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94-8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황 오 파출소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황오동, 성동동, 동천동, 구황동, 배반동, 인왕동, 교 동, 동방동, 남산동, 내남면 일원
	동 부 파출소	경주시 동부동 152-1	경주시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석장동, 노동동, 노서동, 성건동, 사정동, 탑정동,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황남동, 율 동, 배 동 일원
	보 문 파출소	경주시 천군동 168-7	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손곡동, 북군동, 황용동, 덕동동, 보문동, 신평동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주소방서	불국사 파출소	경주시 진현동 611-26	경주시 진현동, 마 동, 하 동, 구정동, 조양동, 도지동, 사래동, 서동, 평동 일원
	용 황 파출소	경주시 황성동 1069-1	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천북면, 현곡면 일원
	안 강 파출소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88-8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일원
	외 동 파출소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550-3	경주시 외동읍 일원
	감 포 파출소	경주시 감포읍 감포3리 62-2	경주시 감포읍,양북면,양남면 일원
	건 천 파출소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314	경주시 건천읍, 산내면, 서 면 일원
김천소방서	지 좌 파출소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지좌동, 덕곡동, 양천동, 농소면, 감천면 일원
	미 곡 파출소	김천시 다수동 422-8	김천시 부곡동, 다수동, 백옥동, 교 동, 삼락동, 문당동, 대항면, 봉산면 일원
	공 단 파출소	김천시 대광동 1347	김천시 신음동, 대광동, 응명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
	지 례 파출소	김천시 지례면 교리 488	김천시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원
	아 포 파출소	김천시 아포읍 인리 1235	김천시 아포읍, 남 면, 감문면 일원
안동소방서	법 흥 파출소	안동시 법흥동 32-9	안동시 일원 (제: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용 상 파출소	안동시 용상동 535-18	안동시 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일원
	풍 산 파출소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207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안동소방서	청 송 파출소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31	청송군 일원 (제:진보면, 파천면)
	진 보 파출소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686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일원
	영 양 파출소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47-1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공 단 파출소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공단동, 임은동, 오태동, 신평동, 비산동 일원
	송 정 파출소	구미시 송정동 72-1	구미시 송정동, 남통동, 형곡동, 광평동, 상모동, 사곡동 일원
	원 평 파출소	구미시 원평동 238	구미시 원평동, 도량동, 지산동,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일원 양호동(591-1~591-398번지) 일부
	인 동 파출소	구미시 진평동 985-35	구미시 인의동, 황상동, 신 동, 구평동, 진평동, 시미동, 임수동, 구포동, 금전동, 거의동, 옥계동 일원 양호동(591-1~591-398번지 제외) 일부
	선 산 파출소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20-5	구미시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고아면 일원
	해 평 파출소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312-3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산동면, 장천면 일원
영주소방서	문 수 파출소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4	영주시 휴천1.2.3동, 가흥1동, 문수면, 평은면, 이산면 일원
	가 흥 파출소	영주시 가흥동 3-2	영주시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가흥2동, 장수면, 안정면 일원
	풍 기 파출소	영주시 풍기읍 성내4리 191-2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일원
	봉 화 파출소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94	봉화군 일원 (제;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일원)
	춘 양 파출소	봉화군 춘양읍 소로리 635-4	봉화군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천소방서	성 내 파출소	영천시 성내동 48-23	영천시 일원 (제;금호읍, 대창면, 신령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금 호 파출소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49	영천시 금호읍, 대창면 일원
	신 령 파출소	영천시 신령면 매양리 424	영천시 신령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상주소방서	서 성 파출소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은척면 일원)
	함 창 파출소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170-2	상주시 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은척면 일원
문경소방서	점 촌 파출소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제;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마성면, 동로면 일원)
	가 은 파출소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58-1	문경시 가은읍, 농암면 일원
	문 경 파출소	문경시 문경읍 하리 122-1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동로면 일원
	예 천 파출소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9-13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조 영 파출소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대정동, 임당동, 대평동, 조영동, 갑제동, 대 동, 사 동, 내 동, 계양동, 삼풍동, 여천동, 남방동, 신천동, 점촌동, 유곡동, 평산동, 압량면, 용성면, 남산면 일원
	중 앙 파출소	경산시 삼북동 268-22	경산시 중산동, 정평동, 삼남동, 서상동,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삼북동, 옥곡동, 중방동, 사정동, 옥산동, 남천면 일원
	하 양 파출소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52-2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진 량 파출소	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1196	경산시 진량면, 자인면 일원
	청 도 파출소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14-9	청도군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의성소방서	봉 양 파출소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6-1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비안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
	의 성 파출소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678-8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일원
	안 계 파출소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16-52	의성군 안계면, 안사면,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구천면 일원
	군 위 파출소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81-8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일원
	의 흥 파출소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468-1	군위군 의흥면, 우보면, 부계면, 고로면, 산성면 일원
성주소방서	성 주 파출소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 령 파출소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69	고령군 일원
칠곡소방서	왜 관 파출소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제;북삼면, 약목면, 석적면)
	북 삼 파출소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708-1	칠곡군 북삼면, 약목면, 석적면 일원
울진소방서	울 진 파출소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	울진군 울진읍, 서 면, 근남면, 원남면 일원
	온 정 파출소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20	울진군 온정면 일원
	죽 변 파출소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8-1	울진군 죽변면, 북 면 일원
	후 포 파출소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273	울진군 후포면, 평해읍, 기성면 일원

[별표4]

구조대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119구조대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대	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119구조대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119구조대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119구조대	안동시 법흥동 32-9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안동소방서 수난구조대	안동시 석동 1664-27	안동호 일원
구미소방서 119구조대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119구조대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1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119구조대	영천시 성내동 48-23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119구조대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119구조대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119구조대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119구조대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주소방서 119구조대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119구조대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119구조대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363	울진군 일원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2006년도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되는 「전국체전 기획단」의 사무를 분장하고,

○ 포항남부소방서 설치에 따른 하부조직과 신설되는 소방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체전기획단 신설 및 사무분장

• 문화체육관광국에 한시적으로 설치·시행('06.12.31까지)

- 전국체전기획단장(지방서기관)

• 전국체전 종합기획·시설지원·홍보이벤트·대회지원분야 사무분장

- 전국체전 기획 및 총괄, 전국체전집행위원회 구성·운영

- 체전시설 건립 및 정비, 숙박시설 관리 배정

- 전국체전 홍보, 자원봉사자 운영 등

○ 소방관서 설치에 따른 하부조직, 관할구역 등 조정

· 포항남부소방서(서장 : 지방소방정)

- 하부조직 :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과장 : 지방소방령)

- 119구조대(신설) : 포항시 남부, 울릉군 일원 관할

- 관할파출소(7) : 일월파출소(신설), 제철 · 해도 · 효자 · 구룡포 · 오천 · 울릉파출소

· 포항소방서 명칭변경 및 관할파출소 조정

- 포항소방서 → 「포항북부소방서」로 명칭변경

- 관할파출소(6) : 덕산 · 두호 · 흥해 · 영덕 · 강구 · 영해파출소

· 파출소 신설(3개소) :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

- 포항남부소방서 일월파출소(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번지)

: 포항시 청림동, 일월동, 인덕동, 동촌동, 동해면 일원

- 의성소방서 봉양파출소(의성군 본양면 구미리 706-1)

: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비안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

- 의성소방서 의흥파출소(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468-1)

: 군위군 의흥면, 우보면, 부계면, 고로면, 산성면 일원

○ 소방서 「구조구급과」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

· 설치대상 : 포항북부 · 경주 · 안동 · 구미소방서

· 방호구조과 → 「방호과」, 「구조구급과」로 분리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 그 외 소방서 :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체제

· 각 소방서 과장의 직급 일원화(소방경 → 지방소방령)

단, 영천 · 상주 · 의성 · 성주 · 칠곡 · 울진소방서의 방호구조과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함.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규칙 제2515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2498호(2005.1.27)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개정규칙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한시정원 90명 중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14명(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2, 지방토목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4, 지방건축주사보 1, 지방기능10급 사무원 2), 산림환경연구소 조경사업추진 4명(지방임업사무관 1, 지방임업주사 1, 지방임업주사보 1, 지방임업서기 1),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22명(지방임업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1,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연구관 1, 지방행정주사 1, 지방임업주사 3, 지방건축주사 1, 지방전산주사보 1, 지방임업주사보 1, 지방전산서기 1, 지방임업서기 2, 지방토목서기 1, 지방학예연구사 1, 지방임업연구사 3, 지방기능9급 전기원 1, 지방기능9급 기계원 1, 지방기능9급 운전원 1,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업무인력 4명(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

사 1, 지방전산주사보 1,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17명(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3, 지방토목주사 1, 지방임업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 1, 지방행정주사보 3, 지방토목주사보 2, 지방건축주사보 1,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 전국체전기획단 15명(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건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3, 지방행정주사보 3, 지방전산주사보 1, 지방토목주사보 1, 지방건축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 1,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혁신분권담당관실 14명(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5, 지방행정주사보 4)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경상북도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총계	4,021	1,137	93	2,404	387
정무직 계	1	1			
별정직 계	33	22	5	5	1
1급상당 소계	1	1			
정무부지사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3급상당 소계	1	1			
행정 · 보건3급 · 별정(보건복지여성)	1	1			
4급상당 소계	3	1	2		
행정4급 · 별정(여성정책과장)	1	1			
행정4급 · 별정(전문위원)	1		1		
행정4급 · 농업4급 · 별정(전문위원)	1		1		
5급상당 소계	4	4			
비서요원	1	1			
문화재연구원	1	1			
정책기획담당요원	1	1			
행정5급 · 별정(혁신기획팀장)	1	1			
6급상당 소계	13	7	2	4	
비서요원	1	1			
화생방관리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3			3	
홍보연구원	2	1	1		
연설문작성원	1	1			
VTR촬영편집기사	1	1			
민원상담사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의장비서	1		1		
레크레이션지도사	1			1	
7급상당 소계	7	6		1	
비서요원	1	1			
보건위생감시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통역사	2	2			
보존문서관리사	1	1			
홍보물제작관리원	1	1			
8급상당 소계	4	2	1		1
홍보연구원	1	1			
VTR촬영편집기사	1	1			
의장비서	1		1		
도시계획원	1				1
연구직 계	196	2		161	33
연구관 소계	28	1		26	1
학예연구관	1	1			
농업연구관	15			15	
임업연구관	1				1
보건연구관	3			3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환경연구관	5			5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3			3	
연구사 소계	168	1		135	32
학예연구사	4	1			3
농업연구사	82			79	3
임업연구사	8				8
잠업연구사	3			3	
축산연구사	7				7
가축위생연구사	7				7
수산연구사	3				3
보건연구사	13			13	
환경연구사	37			37	
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1			1	
농업연구사·환경연구사	2			2	
농업연구사·수산연구사	1				1
지도직 계	28			25	3
지도관 소계	7			6	1
농촌지도관	2			2	
생활지도관	1			1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3			3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1				1
지도사 소계	21			19	2
농촌지도사	16			14	2
생활지도사	5			5	
소방직 계	2,048	51		1,99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38	8		30	
소방령·통신5급	1	1			
소방경	76	7		69	
소방위	141	11		130	
소방장	278	12		266	
소방교	574	9		565	
소방사	923	1		922	
일반직 계	1,308	934	55	75	244
2~3급 소계	1		1		
행정	1		1		
3급 소계	7	6		1	
행정	3	2		1	
시설	1	1			
행정·공업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농림·축산	1	1			
행정·농림·수산·환경	1	1			
4급 소계	63	42	7	5	9
행정	33	22	5	4	2
농업	1	1			
임업	3	2			1
수산	1	1			
시설	5	5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	2			
행정·시설	4	3	1		
행정·통신	1	1			
공업·시설	1				1
축산·수의	1	1			
농업·농업연구관	1			1	
임업·임업연구관	1				1
수의·가축위생연구관	1				1
수산·수산연구관	1				1
행정·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1				1
축산·수의·축산연구관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보건·의무·약무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5급 소계	245	196	8	17	24
행정	126	103	7	13	3
전산	2	1		1	
기계	1	1			
농업	6	6			
임업	9	5			4
축산	2	2			
수의	1	1			
수산	3	2			1
토목	16	13			3
건축	4	4			
지적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3	3			
행정·기계	4	3			1
행정·농업	7	7			
행정·임업	2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 · 수산	2	2			
행정 · 보건	4	4			
행정 · 환경	2	2			
행정 · 토목	8	8			
전산 · 지적	1	1			
행정 · 건축	2	2			
기계 · 농업	1			1	
기계 · 토목	1				1
화공 · 환경	2	2			
임업 · 건축	1	1			
축산 · 수의	2	2			
수의 · 가축위생연구관	5				5
수산 · 수산연구관	1				1
수산 · 선박	1	1			
농업 · 잠업연구관	1			1	
임업 · 임업연구관	1				1
보건 · 약무	1	1			
보건 · 간호	1	1			
보건 · 환경	1			1	
도시계획 · 토목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토목·건축	2	2			
통신·전자통신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기계·화공	1	1			
행정·화공·환경	1	1			
행정·축산·수의	1				1
행정·보건·환경	1	1			
전산·통신·전자통신	1	1			
기계·섬유·자원	1	1			
화공·환경·토목	1	1			
화공·토목·건축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환경·토목·건축	1		1		
기계·전기·화공·자원	1	1			
축산·수의·축산연구관·가축위생연구관	1				1
6급 소계	445	320	18	27	80
행정	210	159	17	17	17
세무	7	7			
사회복지	4	4			
전산	14	10		3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기계	5	4			1
전기	3	3			
섬유	1	1			
화공	3	3			
자원	1	1			
농업	21	17		4	
임업	28	12			16
축산	4	3			1
수의	19	3			16
수산	6	5			1
보건	11	11			
약무	1	1			
간호	1			1	
환경	9	9			
선박	1	1			
토목	37	25	1		11
건축	11	8		1	2
지적	5	5			
통신	3	3			
행정·세무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 · 사회복지	1	1			
행정 · 전산	1	1			
행정 · 기계	3	2			1
행정 · 화공	2	2			
행정 · 농업	1	1			
행정 · 임업	1				1
행정 · 수산	2				2
행정 · 토목	1	1			
기계 · 농업	1			1	
화공 · 환경	2	2			
농업 · 임업	1	1			
농업 · 축산	1	1			
임업 · 임업연구사	1				1
축산 · 수의	1	1			
수의 · 가축위생연구사	2				2
수산 · 선박	1	1			
수산 · 수산연구사	4				4
보건 · 간호	2	2			
보건 · 환경	2	2			
통신 · 전자통신	3	3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도시계획 · 토목	1	1			
축산 · 수의 · 축산연구사	2				2
행정 · 임업 · 토목	1				1
임업 · 토목 · 건축	1	1			
보건 · 약무 · 간호	1	1			
7급 소계	469	333	20	22	94
행정	194	155	19	12	8
세무	8	8			
사회복지	1	1			
전산	24	18	1	2	3
사서	2	1		1	
기계	9	7			2
전기	3	1		1	1
화공	2	2			
농업	19	15		3	1
임업	30	9			21
축산	3	3			
수의	30	3			27
수산	5	3			2
보건	10	10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1	1			
환경	8	8			
선박	1	1			
토목	54	37			17
건축	15	14			1
지적	4	4			
측지	1	1			
통신	4	4			
전자통신	1				1
행정 · 사회복지	2	2			
행정 · 전산	4	4			
행정 · 기계	1	1			
행정 · 보건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토목	2	2			
행정 · 학예연구사	1	1			
기계 · 화공	1	1			
기계 · 농업	1			1	
전기 · 통신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화공 · 환경	2	2			
자원 · 수산	1	1			
농업 · 축산	1	1			
임업 · 임업연구사	1				1
수의 · 가축위생연구사	4				4
수산 · 수산연구사	1				1
보건 · 간호	2	2			
보건 · 환경	2	2			
도시계획 · 토목	1	1			
토목 · 건축	1				1
토목 · 측지	1	1			
통신 · 전자통신	3	3			
축산 · 수의 · 축산연구사	2				2
축산 · 수의 · 축산연구사 · 가축위생연구사	1				1
8급 소계	78	37	1	3	37
행정	26	19	1		6
사회복지	1	1			
전산	10	6		1	3
기계	3	1			2
전기	3				3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농업	3	2		1	
임업	8				8
수산	3	1			2
보건	3	3			
간호	1				1
환경	2	2			
토목	12				12
건축	1			1	
지적	1	1			
화공·환경	1	1			
교원 계	44			44	
학장	1			1	
교수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계	363	127	33	97	106
기능6급 소계	11	5	1	3	2
통신장	2	2			
전기장	1			1	
기계장	4	2		1	1
운전원	2			1	1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선장	1	1			
사무원	1		1		
기능7급 소계	32	18	3	5	6
통신장	4	4			
전기장	1			1	
기계장	12	4		3	5
난방원	1			1	
운전원	5	4			1
선장	1	1			
기관장	2	2			
사무원	5	3	2		
기계장·난방원	1		1		
기능8급 소계	56	12	6	17	21
통신원	3	1	2		
전기원	9	1		7	1
기계원	25	2		5	18
난방원	2	1		1	
운전원	8	2	1	4	1
선원	2	2			
사무원	6	3	3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농림원	1				1
기능9급 소계	117	36	4	37	40
통신원	2	1		1	
교환원	1			1	
전기원	6		1	2	3
기계원	13	1		6	6
난방원	1				1
운전원	31	5	1	10	15
선원	1	1			
농림원	5				5
사육원	3			1	2
보건원	2			2	
위생원	2	1		1	
사무원	40	20	2	12	6
전산원	5	5			
조무원	4	2		1	1
방호원	1				1
기능10급 소계	147	56	19	35	37
통신원	1				1
기계원	12	4	2	3	3

기관별 / 직렬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난방원	1				1
운전원	23	1	2	10	10
농림원	2			2	
사육원	6			2	4
보건원	1			1	
위생원	6	3	1	1	1
사무원	66	39	7	8	12
전산원	7	6			1
조무원	12	1		8	3
방호원	1				1
사무원·전산원	2	2			
사무원·조무원	7		7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2006년도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시행되는 「전국체전기획단」운영 인력과

○ 포항남부소방서, 일월파출소 등 소방관서 설치, 구조구급과 신설 등에 따라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을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道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3,883명 → 4,021명(증 138명)

• 소방직공무원 : 1,925명 → 2,048명(증 123명)

기관별 / 직급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계	1,925	2,048	123	47	51		1,878	1,997	119
지방소방정	16	17	1	2	2		14	15	1
지방소방령	26	38	12	8	8		18	30	12
소방령·통신사무관	1	1		1	1				
지방소방경	60	76	16	6	7		54	69	15
지방소방위	125	141	16	10	11		115	130	15
지방소방장	259	278	19	10	12		249	266	17
지방소방교	544	574	30	9	9		535	565	30
지방소방사	894	923	29	1	1		893	922	29

• 일반직 : 1,294명 → 1,308명(증 14명)

- 본 청 : 행정4급1, 행정5급2, 건축5급1, 행정6급2, 세무6급1,
  행정7급3, 전산7급1, 토목7급1, 건축7급1, 행정8급1

• 기능직 : 362명 → 363명(증 1명)

┌ 본 청 : 10급사무원 1

└ 사업소 : 9급운전원△1, 9급기계원1, 10급조무원△1, 10급사무원1

○ 분야별 조정내역

• 「전국체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책정 15명

- 행정4급1(단장)

- 행정5급2, 건축5급1, 행정6급3, 행정7급3, 전산7급1,

토목7급1, 건축7급1, 행정8급1, 기능10급1

※「전국체전준비팀」 인력 3명(행5급1, 행6급1, 행8급1) 전국체전기획단으로 조정

• 포항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63명

(119구조대, 일월파출소 포함)

- 소방정1, 소방령2, 소방경4, 소방위4, 소방장10, 소방교22, 소방사20

• 의성소방서 봉양·의흥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 32명

- 소방위2, 소방장4, 소방교13, 소방사13

• 포항북부·경주·안동·구미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인력 24명

- 소방령4, 소방경4, 소방위8, 소방장8

(소방서별 6명 - 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2, 소방장2)

• 소방본부(방호구조과) 소방헬기 조정·정비사 인력 4명

-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2

• 소방학교 교관단장 직급상향 조정 : 소방위△1 → 소방경1

• 소방서 과장·담당의 직급조정(영천·상주·의성·성주·칠곡·울진)

┌ 소방행정과장 : 소방경△6 → 소방령6

└ 담당(소방서별 2명) : 소방위△12 → 소방경12

• 화재조사요원 간부화(소방서별 1명씩)

- 소방장△5, 소방교△5, 소방사△4 → 소방위+14

• 본청, 사업소 직렬조정

- 행정6급△1 → 세무6급1(재정과)

- 기능9급운전원△1 → 기능9급기계원1(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기능10급조무원△1 → 기능10급사무원1(수산자원개발연구소)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규칙 제2516호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원 회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기획과학위원회	기획과학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 상당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회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교육환경위원회	교육환경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농정위원회	농정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 상당
경제문화위원회	경제문화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05.2.21)에 따른 위원회별 명칭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별표]위원회 명칭, 직위 변경

위 원 회		직 위		직 급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기획위원회	기획과학위원회	기획위전문위원	기획과학위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 상당
농수산위원회	농정위원회	농수산위전문위원	농정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 상당
산업관광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산업관광위 전 문 위 원	경제문화위 전 문 위 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

훈 령

경상북도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 등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훈령 제1236호

경상북도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 등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정 실현으로 일류 경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

행정혁신 전략회의 및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략회의 등) 지방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군 소속 간부 및 행정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북도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와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 경상북도 행정혁신 서포터즈, 경상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제2장 경상북도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

제3조(설치) 지방행정 혁신전략을 조정·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전략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의 협의사항 조정·결정
2. 경상북도 지방행정혁신 전략조정·협의 및 결정
3. 주요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및 제도개선 협의
4. 기타 행정혁신 관련 주요사안에 관한 사항 조정·결정 등

제5조(구성 등) ①전략회의는 도지사가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도 소속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외부전문가는 행정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례회의는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 안건협의 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행정혁신 관련 긴급한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3장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

제7조(설치) 행정혁신 과제발굴 등 혁신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전략 및 도·시군간 협력방안 등 협의
2. 행정혁신 과제발굴 및 추진방안 협의
3. 혁신추진상황 평가·환류, 장애요인 발굴·해소대책 협의
4. 기타 행정혁신 관련사항 협의 등

제9조(구성 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 실국장, 시군 부시장·부군수와 외부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외부전문가는 행정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례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행정혁신 관련 긴급한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4장 경상북도 행정혁신 서포터즈

제11조(설치) 행정혁신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혁신 서포터즈 (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 아이디어 및 장애요인 발굴 등 혁신활동 전반 자문
2. 공무원 혁신교육 강사
3. 혁신 추진상황 평가, 수범직원 선정 등의 심사
4. 혁신활동에 대한 모니터 역할

제13조(구성 등) ① 서포터즈는 외부전문가, 주민·NGO대표, 기업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 단장은 서포터즈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 서포터즈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행정혁신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단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소집하고,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경상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제15조(설치) 민원·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경상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협의
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3. 제도개선 관련 안건 협의 등 기타 필요사항

제17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

②위원은 실·국 주무과장과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의 제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의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내부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8조(회의) ①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의견청취 등) 전략회의 등의 의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전략회의 및 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 등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사유

○ 지방행정혁신의 추동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행정혁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고객지향 및 성과중심의 일류 지방행정 구현

2. 주요내용

○ 지방행정혁신의 본격적인 추진과 범도민 혁신추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혁신 전략 등을 조정·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행정혁신 전략회의」를 구성

○ 혁신과제 발굴 등 도·시군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혁신 추진방안 등을 평가·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

○ 혁신과제와 장애요인 발굴·자문·평가 등 행정혁신 외부지원과 행정혁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혁신 서포터즈」구성

○ 민원·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및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05년 8월 1일

경상북도 훈령 제1237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및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및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18”을 “1,137”로 하고, 소방직 계 “47”을 “51”로 하며, 지방소방경 “6”을 “7”로 하고, 지방소방위 “10”을 “11”로 하며, 지방소방장 “10”을 “12”로 하고, 2급 내지 9급 계 “920”을 “934”로 하며, 지방서기관 “21”을 “22”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 “101”을 “103”으로 하며, 지방건축사무관 “3”을 “4”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157”을 “159”로 하며, 지방세무주사 “6”을 “7”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보 “152”를 “155”로 하며, 지방전산주사보 “17”을 “18”로 하고, 지방토목주사보 “36”을 “37”로 하며, 지방건축주사보 “13”을 “14”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18”을 “19”로 하며, 기능직 계 “126”을 “127”로 하고, 지방기능10급 사무원 “38”을 “39”로 한다.

별표1의6 자치행정국정원표중 지방행정주사 “36”을 “35”로 하고, 지방세무주사 “6”을 “7”로 한다.

별표1의7 문화체육관광국정원표중 총계 “105”를 “120”으로 하고, 2급 내지 9급 계 “93”을 “107”로 하고, 지방서기관 “5”를 “6”으로 하며, 지방행정사무관 “18”을 “20”으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 20” 다음에 “지방건축사무관 1”을 신설하며, 지방행정주사 “20”을 “23”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보 “22”를 “25”로 하며, “지방행정주사보 25” 다음에 “지방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지방토목주사보 “2”를 “3”으로 하며, 지방건축주사보 “4”를 “5”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9”를 “10”으로 하고, 지방기능10급 사무원 “7”을 “8”로 한다.

별표1의29 방호구조과정원표중 소계 “34”를 “38”로 하고, 소방직 계 “33”을 “37”로 하며, 지방소방경 “4”를 “5”로 하고, 지방소방위 “7”을 “8”로 하며,

지방소방장 “7”을 “9”로 한다.

별표3 직속기관지방공무원정원표중 총계 “2,285”를 “2,404”로 하고, 소방직 계 “1,878”을 “1,997”로 하며, 지방소방정 “14”를 “15”로 하고, 지방소방령 “18”을 “30”으로 하며, 지방소방경 “54”를 “69”로 하고, 지방소방위 “115”를 “130”으로 하며, 지방소방장 “249”를 “266”으로 하고, 지방소방교 “535”를 “565”로 하며, 지방소방사 “893”을 “922”로 한다.

별표3의5 소방관서지방공무원정원표중 소계 “1,886”을 “2,005”로 하고, 소방직 계 “1,878”을 “1,997”로 하며, 지방소방정 “14”를 “15”로 하고, 지방소방령 “18”을 “30”으로 하며, 지방소방경 “54”를 “69”로 하고, 지방소방위 “115”를 “130”으로 하며, 지방소방장 “249”를 “266”으로 하고, 지방소방교 “535”를 “565”로 하며, 지방소방사 “893”을 “922”로 한다.

별표3의5의2 소방학교정원표중 지방소방경 “4”를 “5”로 하고, 지방소방위 “7”을 “6”으로 한다.

별표3의5의3 “포항소방서정원표”를 “포항북부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소계 “236”을 “154”로 하며, 소방직 계 “236”을 “154”로 하며, 지방소방령 “2”를 “3”으로 하며, 지방소방경 “6”을 “7”로 하고, 지방소방위 “13”을 “10”으로 하며, 지방소방장 “36”을 “15”로 하고, 지방소방교 “65”를 “29”로 하며, 지방소방사 “113”을 “89”로 한다.

별표3의5의4 포항남부소방서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의5의4] 포항남부소방서정원표

소 계	151
소방직 계	151
지방소방정	1
지방소방령	2
지방소방경	4
지방소방위	10
지방소방장	32
지방소방교	58
지방소방사	44

“별표3의5의4 경주소방서정원표”를 “별표3의5의5 경주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소계 “175”를 “181”로 하며, 소방직 계 “175”를 “181”로 하며, 지방소방령 “2”를 “3”으로 하며, 지방소방경 “5”를 “6”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10”을 “13”으로 하며, 지방소방장 “25”를 “26”으로 한다.

“별표3의5의5 김천소방서정원표”를 “별표3의5의6 김천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지방소방위 “6”을 “7”로 하며, 지방소방교 “30”을 “29”로 한다.

“별표3의5의6 안동소방서정원표”를 “별표3의5의7 안동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소계 “184”를 “190”으로 하며, 소방직 계 “184”를 “190”으로 하며, 지방소방령 “2”를 “3”으로 하며, 지방소방경 “5”를 “6”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8”을 “11”로 하며, 지방소방장 “27”을 “28”로 한다.

“별표3의5의7 구미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8 구미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소계 “143” 을 “149” 로 하며, 소방직 계 “143” 을 “149” 로 하며, 지방소방령 “2” 를 “3” 으로 하며, 지방소방경 “5” 를 “6” 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7” 을 “10” 으로 하며, 지방소방장 “20” 을 “21” 로 한다.

“별표3의5의8 영주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9 영주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지방소방위 “6” 을 “7” 로 하며, 지방소방교 “38” 을 “37” 로 한다.

“별표3의5의9 영천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10 영천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지방소방정 1” 다음에 “지방소방령 1” 을 신설하며, 지방소방경 “2” 를 “3” 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8” 을 “7” 로 하며, 지방소방교 “26” 을 “25” 로 한다.

“별표3의5의10 상주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11 상주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지방소방정 1” 다음에 “지방소방령 1” 을 신설하며, 지방소방경 “2” 를 “3” 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7” 을 “6” 으로 하며, 지방소방교 “38” 을 “37” 로 한다.

“별표3의5의11 문경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12 문경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지방소방위 “5” 를 “6” 으로 하며, 지방소방교 “36” 을 “35” 로 한다.

“별표3의5의12 경산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13 경산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지방소방위 “6” 을 “7” 로 하며, 지방소방장 “20” 을 “19” 로 한다.

“별표3의5의13 의성소방서정원표” 를 “별표3의5의14 의성소방서정원표” 로 하고, 소

계 “106”을 “138”로 하며, 소방직 계 “106”을 “138”로 하고, “지방소방정 1” 다음에 “지방소방령 1”을 신설하며, 지방소방경 “2”를 “3”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9”를 “10”으로 하며, 지방소방장 “14”를 “18”로 하고, 지방소방교 “32”를 “45”로 하며, 지방소방사 “48”을 “60”으로 한다.

“별표3의5의14 성주소방서정원표”를 “별표3의5의15 성주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지방소방정 1” 다음에 “지방소방령 1”을 신설하며, 지방소방경 “2”를 “3”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7”을 “6”으로 하며, 지방소방사 “48”을 “47”로 한다.

“별표3의5의15 칠곡소방서정원표”를 “별표3의5의16 칠곡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지방소방정 1” 다음에 “지방소방령 1”을 신설하며, 지방소방경 “2”를 “3”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7”을 “6”으로 하며, 지방소방사 “38”을 “37”로 한다.

“별표3의5의16 울진소방서정원표”를 “별표3의5의17 울진소방서정원표”로 하고, “지방소방정 1” 다음에 “지방소방령 1”을 신설하며, 지방소방경 “2”를 “3”으로 하고, 지방소방위 “9”를 “8”로 하며, 지방소방사 “46”을 “45”로 한다.

별표4 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중 지방기능9급 기계원 “5”를 “6”으로 하고, 지방기능9급 운전원 “16”을 “15”로 하며,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1”을 “12”로 하고, 지방기능10급 조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4의5 수산자원종합개발연구소정원표중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을 “2”로 하고, “지방기능10급 조무원 1”을 삭제한다.

별표4의5의2 본소정원표중 “지방기능10급 조무원 1”을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로 한다.

별표4의7 종합건설사업소정원표중 지방기능9급 기계원 “3”을 “4”로 하고, 지방기능9급 운전원 “6”을 “5”로 한다.

별표4의7의3 북부지소정원표중 지방기능9급 기계원 “3”을 “4”로 하고, 지방기능9급 운전원 “3”을 “2”로 한다.

별표6 한시공무원정원표중 합계란의 계 “75”를 “90”으로 하고,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란 다음에 “전국체전기획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국체전 기 획 단	15	행정4급 1 행정5급 2 건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3 전산7급 1 토목7급 1 건축7급 1 행정8급 1 기능10급(사무) 1	2006. 12. 31	전국체전기획단

별표7 사무분장표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실과란 중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란 다음에 “전국체전기획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 과	분 장 사 무
전국체전 기 획 단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2. 전국체전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전국체전 공식행사 기획·조정·입장권 관리 4. 전국체전예산 심의 및 확보 5. 상징물개발 및 승인신청 6. 전국체전집행위원회 구성 운영 7.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8. 범도민후원회 구성 운영 9. 기관단체, 부서별 업무 협조 10. 세미나,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11. 기록관리 및 체전백서 발간 12.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정비 13. 주 경기장 단장 및 성화시설 설치 14. 경기장 사용신청 및 공·승인 지원 15. 경기장 주차장시설 확보 16. 경기장 부대시설 정비 및 임차 17. 홍보관 설치 및 경기장내 광고설치 조정 18. 선수촌APT 관리운영, 임원·선수단, 초청인사 숙박 배정 19. 전국체전 홍보사업 개발·추진 20. 주관방송사 선정, 프레스센터 운영 21. 응원 캐치프레이즈 개발 22. 전국체전 디자인메뉴얼 제작 23. 체전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 24. 자원봉사자 운영 25. 경기장내외 사무용집기, 물품구입 임차배부 26. 전야제 및 문화행사 전반지원 27. 기념품 제작·구입, 증정 28. 교통 및 선수단 수송대책 지원 29. 각종 안내소 운영

소방서 소관 실과란 중 “방호구조과”란을 삭제하고, “소방행정과”란 다음에 “방호과” 및 “구조구급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 과	분 장 사 무
방 호 과	1.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각종 훈련 3.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 처리 4.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5. 방화관리 및 소방훈련의 지도 6. 세입 및 소방사범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8. 산화 및 풍·수·한·설해 등 천재시 소방지원 대책 9. 화재진압 및 직원훈련 10. 화재조사, 화재통계와 분석 및 각종 증명발급 11. 방화사상 계몽선전 및 소방홍보 12.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완비촉진과 지도 13. 건축·위험물 관련 민원서류 조사처리 14. 무허가위험물 및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약제단속 15.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 처리 및 지도 16. 방화건축 및 방염처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점검업 등의 등록 및 지도 18.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신청·신고· 변경 허가 및 지도 19.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및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20. 화재예방에 관한 민원서류 조사 처리 21. 한국119소년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2.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23.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4. 화재통계분석,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25. 유관기관(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의 협조체제 26. 제조물책임법 등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27.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8. 피해조사 및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설치 운영 29. 화재와 관련된 소방사범 현황 관리

실 과	분 장 사 무
방 호 과	30. 화재특별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31. 조사차량, 감식장비 등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32.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과	1. 화재, 구조·구급, 재난정보 접보·처리 및 전파 2. 화재, 구조·구급, 재난 지령 및 상황보고 3. 응원출동 및 유관기관 협조·지령·통제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 5. 무선통신, 전산장비 설치·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지령·전산교육 및 소방전산 자료 관리 7. 가스·독극물 재해 및 선박·항공기·지하철·방사선 등의 특수재해 소방대책 8. 구조구급 업무의 기획 및 조사 9. 구조대책 구급기술의 연구·지도 10. 구조구급장비 확충 및 운용 11. 구조구급 실적분석 및 대책 수급 1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조구급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복제에 관한 사항 14.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시 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15.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 수습·훈련 1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정비 18. 구급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구조구급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정비 20. 한국수난안전협회 지도·감독 21. 수난구호법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조·구급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대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4. 구조·구급 홍보 및 사례에 관한 사항 25. 긴급구조 훈련 26. 대 국민 재난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총 계	1,118	· · · · · · · ·	1,137
소방직 계	47	· · · · · · · · · ·	51
지방소방경	6	· · · · · · · · · · · · · ·	7
지방소방위	10	· · · · · · · · · · · · · ·	11
지방소방장	10	· · · · · · · · · · · · · ·	12
2급 내지 9급 계	920	· · · · · · · · · · · · · · · · · · ·	934
지방서기관	21	· · · · · · · · · · · · · ·	22
지방행정사무관	101	· · · · · · · · · · · · · · · · · · ·	103
지방건축사무관	3	· · · · · · · · · · · · · · · · · · ·	4
지방행정주사	157	· · · · · · · · · · · · · · ·	159
지방세무주사	6	· · · · · · · · · · · · · · ·	7
지방행정주사보	152	· · · · · · · · · · · · · · · · · · ·	155
지방전산주사보	17	· · · · · · · · · · · · · · · · · · ·	18
지방토목주사보	36	· · · · · · · · · · · · · · · · · · ·	37
지방건축주사보	13	· · · · · · · · · · · · · · · · · · ·	14
지방행정서기	18	· · · · · · · · · · · · · · ·	19
기능직 계	126	· · · · · · · · · · · · · · · · · · ·	127
지방기능10급 사무원	38	· · · · · · · · · · · · · · · · · · ·	39

현 행		개 정	
[별표1의6] 자치행정국정원표		[별표1의6] 자치행정국정원표	
지방행정주사	36	· · · · · · · · · · · · · ·	35
지방세무주사	6	· · · · · · · · · · · · · ·	7
[별표1의7] 문화체육관광국정원표		[별표1의7] 문화체육관광국정원표	
총 계	105	· · · · · · · · · · ·	120
2급 내지 9급 계	93	· · · · · · · · · · · · · · · · · · · ·	107
지방서기관	5	· · · · · · · · · · · · · ·	6
지방행정사무관	18	· · · · · · · · · · · · · · · · · ·	20
<신 설>		지방건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20	· · · · · · · · · · · · · · ·	23
지방행정주사보	22	· · · · · · · · · · · · · · · · · ·	25
<신 설>		지방전산주사보	1
지방토목주사보	2	· · · · · · · · · · · · · · · · · ·	3
지방건축주사보	4	· · · · · · · · · · · · · · · · · ·	5
지방행정서기	4	· · · · · · · · · · · · · · ·	5
기능직 계	9	· · · · · · · · · · · · · · · · · ·	10
지방기능10급 사무원	7	· · · · · · · · · · · · · · · · · · · ·	8

현 행		개 정	
[별표1의29] 방호구조과정원표		[별표1의29] 방호구조과정원표	
소 계	34	· · · · · · · · · · ·	38
소방직 계	33	· · · · · · · · · · · · · ·	37
지방소방경	4	· · · · · · · · · · · · · ·	5
지방소방위	7	· · · · · · · · · · · · · ·	8
지방소방장	7	· · · · · · · · · · · · · ·	9
[별표3] 직속기관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 직속기관지방공무원정원표	
총 계	2,285	· · · · · · · · · ·	2,404
소방직 계	1,878	· · · · · · · · · · · · · ·	1,997
지방소방정	14	· · · · · · · · · · · · · · ·	15
지방소방령	18	· · · · · · · · · · · · · · ·	30
지방소방경	54	· · · · · · · · · · · · · · ·	69
지방소방위	115	· · · · · · · · · · · · · · ·	130
지방소방장	249	· · · · · · · · · · · · · · ·	266
지방소방교	535	· · · · · · · · · · · · · · ·	565
지방소방사	893	· · · · · · · · · · · · · · ·	922

현 행		개 정	
[별표3의5] 소방관서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의5] 소방관서지방공무원정원표	
소 계	1,886	· · · · · · · · · · ·	2,005
소방직 계	1,878	· · · · · · · · · · · · · ·	1,997
지방소방정	14	· · · · · · · · · · · · · ·	15
지방소방령	18	· · · · · · · · · · · · · ·	30
지방소방경	54	· · · · · · · · · · · · · ·	69
지방소방위	115	· · · · · · · · · · · · · ·	130
지방소방장	249	· · · · · · · · · · · · · ·	266
지방소방교	535	· · · · · · · · · · · · · ·	565
지방소방사	893	· · · · · · · · · · · · · ·	922
[별표3의5의2] 소방학교정원표		[별표3의5의2] 소방학교정원표	
지방소방경	4	· · · · · · · · · · · · · ·	5
지방소방위	7	· · · · · · · · · · · · · ·	6

현 행		개 정	
[별표3의5의3] 포항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3] 포항북부소방서정원표	
소 계	236	· · · · · · · · · · ·	154
소방직 계	236	· · · · · · · · · · · · · ·	154
지방소방령	2	· · · · · · · · · · · · ·	3
지방소방경	6	· · · · · · · · · · · · ·	7
지방소방위	13	· · · · · · · · · · · · ·	10
지방소방장	36	· · · · · · · · · · · · ·	15
지방소방교	65	· · · · · · · · · · · · ·	29
지방소방사	113	· · · · · · · · · · · · ·	89
<신 설>		[별표3의5의4] 포항남부소방서정원표	
<신 설>		소 계	151
<신 설>		소방직 계	151
<신 설>		지방소방정	1
<신 설>		지방소방령	2
<신 설>		지방소방경	4
<신 설>		지방소방위	10
<신 설>		지방소방장	32
<신 설>		지방소방교	58
<신 설>		지방소방사	44

현 행		개 정	
[별표3의5의4] 경주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5] 경주소방서정원표	
소 계	175	· · · · · · · · · · ·	181
소방직 계	175	· · · · · · · · · · · · ·	181
지방소방령	2	· · · · · · · · · · · · ·	3
지방소방경	5	· · · · · · · · · · · · ·	6
지방소방위	10	· · · · · · · · · · · · ·	13
지방소방장	25	· · · · · · · · · · · · ·	26
[별표3의5의5] 김천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6] 김천소방서정원표	
지방소방위	6	· · · · · · · · · · · · ·	7
지방소방교	30	· · · · · · · · · · · · ·	29
[별표3의5의6] 안동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7] 안동소방서정원표	
소 계	184	· · · · · · · · · · ·	190
소방직 계	184	· · · · · · · · · · · · ·	190
지방소방령	2	· · · · · · · · · · · · ·	3
지방소방경	5	· · · · · · · · · · · · ·	6
지방소방위	8	· · · · · · · · · · · · ·	11
지방소방장	27	· · · · · · · · · · · · ·	28

현 행		개 정	
[별표3의5의8] 영주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9] 영주소방서정원표	
지방소방위	6	· · · · · · · · · · · · · ·	7
지방소방교	38	· · · · · · · · · · · · · ·	37
[별표3의5의7] 구미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8] 구미소방서정원표	
소 계	143	· · · · · · · · · · ·	149
소방직 계	143	· · · · · · · · · · · · ·	149
지방소방령	2	· · · · · · · · · · · · · ·	3
지방소방경	5	· · · · · · · · · · · · · ·	6
지방소방위	7	· · · · · · · · · · · · · ·	10
지방소방장	20	· · · · · · · · · · · · · ·	21
[별표3의5의9] 영천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0] 영천소방서정원표	
<신 설>		지방소방령	1
지방소방경	2	· · · · · · · · · · · · · ·	3
지방소방위	8	· · · · · · · · · · · · · ·	7
지방소방교	26	· · · · · · · · · · · · · ·	25
[별표3의5의10] 상주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1] 상주소방서정원표	
<신 설>		지방소방령	1
지방소방경	2	· · · · · · · · · · · · · ·	3
지방소방위	7	· · · · · · · · · · · · · ·	6
지방소방교	38	· · · · · · · · · · · · · ·	37

현 행		개 정	
[별표3의5의11] 문경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2] 문경소방서정원표	
지방소방위	5	· · · · · · · · · · · · · ·	6
지방소방교	36	· · · · · · · · · · · · · ·	35
[별표3의5의12] 경산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3] 경산소방서정원표	
지방소방위	6	· · · · · · · · · · · · · ·	7
지방소방장	20	· · · · · · · · · · · · · ·	19
[별표3의5의13] 의성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4] 의성소방서정원표	
소 계	106	· · · · · · · · · · ·	138
소방직 계	106	· · · · · · · · · · · · ·	138
<신 설>		지방소방령	1
지방소방경	2	· · · · · · · · · · · · · ·	3
지방소방위	9	· · · · · · · · · · · · · ·	10
지방소방장	14	· · · · · · · · · · · · · ·	18
지방소방교	32	· · · · · · · · · · · · · ·	45
지방소방사	48	· · · · · · · · · · · · · ·	60

현 행		개 정	
[별표3의5의14] 성주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5] 성주소방서정원표	
<신 설>		지방소방령	1
지방소방경	2	·····	3
지방소방위	7	·····	6
지방소방사	48	·····	47
[별표3의5의15] 칠곡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6] 칠곡소방서정원표	
<신 설>		지방소방령	1
지방소방경	2	·····	3
지방소방위	7	·····	6
지방소방사	38	·····	37
[별표3의5의16] 울진소방서정원표		[별표3의5의17] 울진소방서정원표	
<신 설>		지방소방령	1
지방소방경	2	·····	3
지방소방위	9	·····	8
지방소방사	46	·····	45

현 행		개 정	
[별표4] 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4] 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지방기능9급 기계원	5	· ·	6
지방기능9급 운전원	16	· ·	15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1	· ·	12
지방기능10급 조무원	4	· ·	3
[별표4의5] 수산자원개발연구소정원표		[별표4의5] 수산자원개발연구소정원표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	· ·	2
지방기능10급 조무원	1	<삭 제>	
[별표4의5의2] 본소정원표		[별표4의5의2] 본소정원표	
지방기능10급 조무원	1	지방기능10급 사무원	1
[별표4의7] 종합건설사업소정원표		[별표4의7] 종합건설사업소정원표	
지방기능9급 기계원	3	· ·	4
지방기능9급 운전원	6	· ·	5
[별표4의7의3] 북부지소정원표		[별표4의7의3] 북부지소정원표	
지방기능9급 기계원	3	· ·	4
지방기능9급 운전원	3	· ·	2

현 행		개 정 안	
[별표7] 사무분장표		[별표7] 사무분장표	
실 과	분 장 사 무	실 과	분 장 사 무
<신 설>		전국체전 기획단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2. 전국체전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전국체전 공식행사 기획·조정·입장권 관리 4. 전국체전예산 심의 및 확보 5. 상징물개발 및 승인신청 6. 전국체전집행위원회 구성 운영 7.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8. 범도민후원회 구성 운영 9. 기관단체, 부서별 업무 협조 10. 세미나,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11. 기록관리 및 체전백서 발간 12.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정비 13. 주 경기장 단장 및 성화시설 설치 14. 경기장 사용신청 및 공·승인 지원 15. 경기장 주차장시설 확보 16. 경기장 부대시설 정비 및 임차 17. 홍보관 설치 및 경기장내 광고설치 조정 18. 선수촌APT 관리운영, 임원·선수단, 초청인사 숙박 배정 19. 전국체전 홍보사업 개발·추진 20. 주관방송사 선정, 프레스센터 운영 21. 응원 캐치프레이즈 개발 22. 전국체전 디자인메뉴얼 제작 23. 체전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 24. 자원봉사자 운영 25. 경기장내외 사무용집기, 물품구입 임차배부 26. 전야제 및 문화행사 전반지원 27. 기념품 제작·구입, 증정 28. 교통 및 선수단 수송대책 지원 29. 각종 안내소 운영

현 행		개 정 안	
실 과	분 장 사 무	실 과	분 장 사 무
방호구조과	1.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각종 훈련 3.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 처리 4.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5. 방화관리 및 소방훈련의 지도 6. 세입 및 소방사범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8. 화재, 구조·구급, 재난정보 접보·처리 및 전파 9. 화재, 구조·구급, 재난 지령 및 상황보고 10. 응원출동 및 유관기관 협조·지령·통제에 관한 사항 11.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 12. 무선통신, 전산장비 설치·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지령·전산교육 및 소방전산자료 관리 14. 산화 및 풍·수·한·설해 등 천재시 소방지원 대책 15. 가스·독극물 재해 및 선박·항공기·지하철· 방사선 등의 특수재해 소방대책 16. 화재진압 및 직원훈련 17. 화재조사, 화재통계와 분석 및 각종 증명발급 18. 방화사상 계몽선전 및 소방홍보 19.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완비촉진과 지도 20. 건축·위험물 관련 민원서류 조사처리 21. 무허가위험물 및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약제단속 22.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 처리 및 지도 23. 방화건축 및 방염처리에 관한 사항 24.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점검업 등의 등록 및 지도 25.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신청·신고· 변경 허가 및 지도 26.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및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27. 화재예방에 관한 민원서류 조사 처리 28. 한국119소년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9.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실 과	분 장 사 무	실 과	분 장 사 무
방호구조과	30. 구조구급 업무의 기획 및 조사 31. 구조대책 구급기술의 연구·지도 32. 구조구급장비 확충 및 운용 33. 구조구급 실적분석 및 대책 수급 34.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5. 구조구급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복제에 관한 사항 36.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시 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37.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 수습·훈련 3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9.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정비 40. 구급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구조구급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정비 42. 한국수난안전협회 지도·감독 43. 수난구호법 운영에 관한 사항 44. 구조·구급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45. 구조·구급대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6. 구조·구급 홍보 및 사례에 관한 사항 47.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48.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9. 화재통계분석,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50. 유관기관(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의 협조체제 51. 제조물책임법 등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52.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3. 피해조사 및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설치 운영 54. 화재와 관련된 소방사범 현황 관리 55. 화재특별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56. 조사차량, 감식장비 등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실 과	분 장 사 무	실 과	분 장 사 무
<신 설>		방 호 과	1.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각종 훈련 3.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 처리 4.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5. 방화관리 및 소방훈련의 지도 6. 세입 및 소방사범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8. 산화 및 풍·수·한·설해 등 천재시 소방지원 대책 9. 화재진압 및 직원훈련 10. 화재조사, 화재통계와 분석 및 각종 증명발급 11. 방화사상 계몽선전 및 소방홍보 12.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완비촉진과 지도 13. 건축·위험물 관련 민원서류 조사처리 14. 무허가위험물 및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약제단속 15.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 처리 및 지도 16. 방화건축 및 방염처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점검업 등의 등록 및 지도 18.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신청·신고·변경 허가 및 지도 19.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및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20. 화재예방에 관한 민원서류 조사 처리 21. 한국119소년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2. 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23.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4. 화재통계분석,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25. 유관기관(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의 협조체제 26. 제조물책임법 등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27.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8. 피해조사 및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설치 운영 29. 화재와 관련된 소방사범 현황 관리 30. 화재특별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31. 조사차량, 감식장비 등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32.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실 과	분 장 사 무	실 과	분 장 사 무
<신 설>		구조구급과	1. 화재, 구조·구급, 재난정보 접보·처리 및 전파 2. 화재, 구조·구급, 재난 지령 및 상황보고 3. 응원출동 및 유관기관 협조·지령·통제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자료 정보교환 5. 무선통신, 전산장비 설치·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지령·전산교육 및 소방전산 자료 관리 7. 가스·독극물 재해 및 선박·항공기·지하철·방사선 등의 특수재해 소방대책 8. 구조구급 업무의 기획 및 조사 9. 구조대책 구급기술의 연구·지도 10. 구조구급장비 확충 및 운용 11. 구조구급 실적분석 및 대책 수급 1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조구급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복제에 관한 사항 14.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시 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15. 인위재난 및 특수재해 수습·훈련 1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정비 18. 구급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구조구급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정비 20. 한국수난안전협회 지도·감독 21. 수난구호법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조·구급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대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4. 구조·구급 홍보 및 사례에 관한 사항 25. 긴급구조 훈련 26. 대 국민 재난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별표8]

단위업무분야(담당·팀)의 명칭

부 서 명		담 당 업 무 분 야
공보관실		홍보기획, 보도지원, 홍보관리
감사관실		감사, 회계감사, 공직윤리, 기술감사, 조사
기획관리실	기획관실	기획, 정책발전, 의회협력, 평가비상대책, 통계, 정책기획(팀)
	혁신분권담당관	혁신기획(팀), 혁신학습(팀), 혁신지원(팀), 프로세스혁신(팀), 지방분권(팀), 균형발전(팀)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투자심사, 공기업
	법무담당관	법제, 소송, 행정심판
경제통상실	경제교통정책과	경제정책, 경제진흥, 유통경제, 교통관리, 차량관리
	기업노동과	기업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노정, 실업대책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국제교류, 통상진흥
	투자유치과	해외투자유치(팀), 국내투자유치(팀), 투자관리(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 인사, 고시, 후생복지, 민원, 청사관리
	자치행정과	행정, 조직관리, 자치발전, 국가기반보호, 독도지킴이(팀), 교육지원
	새마을봉사과	새마을, 자원봉사지원, 지역진흥, 경관조성
	재정과	세정, 세입관리, 평가심사, 세무지도, 과표, 경리, 복식부기(팀), 계약관리, 재산관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정책, 예술, 문화영상산업, 종무, 문화상품개발
	문화재과	문화재관리, 문화재시설, 문화재연구
	체육청소년과	체육지원, 생활체육,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관광진흥과	관광진흥,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홍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기획관리(팀), 민자유치(팀), 개발사업(팀)
	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총무기획(팀), 민자유치(팀), 기반조성(팀), 시설조경(팀)
	전국체전기획단	종합기획(팀), 시설지원(팀), 홍보이벤트(팀), 대회지원(팀)

부 서 명		담 당 업 무 분 야
과 학 정 보 산업국	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정책, 산학협력, 첨단산업, 에너지관리
	지역산업진흥과	지역산업정책, 벤처기업지원, 바이오산업, 섬유산업
	정보통신과	정보화기획(팀), 인터넷운영(팀), 정보관리(팀), 정보신기술(팀), 통신운영(팀)
농정국	농정과	농정관리, 농정기획, 농촌인력, 농지관리, WTO·FTA농업대책(팀)
	농산과	농산, 환경농업, 소득지원, 양곡관리
	농업기반과	농업기반, 농업용수, 경지정리
	유통특작과	유통지원, 농산물수출, 과수화훼, 채소잠특
	축산과	축산관리, 축산경영, 축산물유통, 가축위생, 가축방역
환 경 산 림 수산국	환경관리과	환경기획, 환경관리, 대기관리, 공단지도, 폐기물관리
	수질보전과	수질보전, 수계관리, 상수도, 하수관리
	산림정책과	산림기획, 자원조성, 산지관리
	산림보호과	산림보호, 산림방제, 백두대간보호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수산자원, 수산시설, 해양관리, 연안보전
보 건 복 지 여성국	사회노인복지과	복지정책, 사회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체육, 노인복지, 노인보건
	보건위생과	보건행정, 방역관리, 건강증진, 식품의약, 위생관리, 한방진흥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지원, 보육아동
건 설 도 시 재난국	도시계획과	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토목, 토지이용, 공단조성
	지역개발과	지역개발, 개발시설, 건설기술
	도로과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정비
	하천과	하천행정, 하천시설, 하천정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총괄, 민방위, 재난안전, 방재, 재해복구,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주택지적과	주택지적행정, 주택관리, 건축관리, 지적관리, 지적전산, 지리정보
소 방 본 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예산장비, 기획감찰
	방호구조과	방호, 예방홍보, 구조구급, 화재조사, 정보통신, 소방항공대

부 서 명			담 당 업 무 분 야
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 경리, 공보
	의사담당관실		의사, 의안, 기록, 입법정책지원(팀)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관리, 농업인회관
	시험연구국	경영작물과	연구협력, 답작, 전작
		원예연구과	채소, 과수, 화훼
		환경농업연구과	환경관리, 병리곤충, 농산물이용
	기술보급국	지도기획과	기획, 기술공보, 인력육성, 영농교육
		기술보급과	식량작물, 원예작물, 소득개발
		생활기술과	가정경영, 생활환경, 농촌여성
	농산물원종장		관리, 답작, 전작, 의성분장
	잠사곤충사업장		잠사곤충, 소득개발
	생물자원연구소		생물자원연구, 유전공학연구
	신물질연구소		연구
	특화작목시험장	성주과채류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영양고추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구미화훼시험장, 풍기인삼시험장	연구
	지방공무원교육원		
		총무과	총무, 관리
		공무원교육과	교육행정, 교육운영, 교육평가, 교수팀
		도민연수과	도민교육기획, 도민교육운영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총무, 관리
		연구부	미생물검사·약품화학·식품분석·환경조사·대기보전·수질조사·음용수·폐기물분석科
	북부지원		

부 서 명			담 당 업 무 분 야
직속기관	소 방학교		
		총무과	총무, 경리
		교학과	교무, 교수
	포항북부·경주·안동·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 - 예산장비 방호과 - 방호 - 예방홍보 - 화재조사(포항) 구조구급과 - 구조 - 구급
	포항남부·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성주·칠곡·울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 - 예산장비 방호구조과 - 방호 - 예방홍보 - 구조구급(경산)
	경도대학		
		기획홍보과	기획홍보
		교학지원과	교무, 학생
		행정지원과	총무, 시설
사업소	자 연환경연수원		
		운영과	관리, 시설, 교육지원
		연수팀	
	가 축위생시험소		
		관리담당	
		가축방역과	방역, 시험
		축산물검사과	검사, 분석
	북부지소		관리, 방역, 축산물검사
	동부지소		관리, 방역, 축산물검사
	서부지소		관리, 방역, 축산물검사
	축 산기술연구소		
		관리담당	
		사업과	축산관리, 사료자재
		한우연구실	

부 서 명			담 당 업 무 분 야
사업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관리
		생산과	생산1, 생산2, 생산3
		민물고기연구센터	관리, 개발
	산림환경연구소		
		관리운영과	관리, 임업생산
		임업시험과	산림환경, 자원보호, 기술개발
		산림사업과	시설관리, 임도, 사방
		조경사업과	조경사업, 수목원관리
		북부지소	관리, 임도, 사방
		서부지소	관리, 임도, 사방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	관리, 보상, 장비
		시설과	시설1, 시설2
		도로정비과	도로정비, 포장, 과적단속
		교량안전관리과	교량관리, 교량점검
		시험실	
		북부지소	관리, 시설, 도로정비, 포장, 교량관리, 청사관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리, 시설
	서울사무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관리과	관리, 박물관, 시설
		자원개발과	조성, 자원정보, 자원연구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		
		생명산업정보팀	관리, 정보관리
		경영지원팀	경영개선, 기술보급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및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2006년도 개최되는「제87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시행되는「전국체전기획단」운영 인력과

○ 포항남부소방서, 일월파출소 등 소방관서 설치, 구조구급과 신설 등에 따라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배정하고 세부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道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3,883명 → 4,021명(증 138명)

· 소방직공무원 : 1,925명 → 2,048명(증 123명)

기관별 / 직급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계	1,925	2,048	123	47	51	4	1,878	1,997	119
지방소방정	16	17	1	2	2		14	15	1
지방소방령	26	38	12	8	8		18	30	12
소방령·통신사무관	1	1		1	1				
지방소방경	60	76	16	6	7	1	54	69	15
지방소방위	125	141	16	10	11	1	115	130	15
지방소방장	259	278	19	10	12	2	249	266	17
지방소방교	544	574	30	9	9		535	565	30
지방소방사	894	923	29	1	1		893	922	29

• 일반직 : 1,294명 → 1,308명(증 14명)

- 본 청 : 행정4급1, 행정5급2, 건축5급1, 행정6급2, 세무6급1, 행정7급3, 전산7급1, 토목7급1, 건축7급1, 행정8급1

• 기능직 : 362명 → 363명(증 1명)

┌ 본 청 : 10급사무원 1

└ 사업소 : 9급운전원△1, 9급기계원1, 10급조무원△1, 10급사무원1

○ 분야별 조정내역

• 「전국체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책정 15명

- 행정4급1(단장)

- 행정5급2, 건축5급1, 행정6급3, 행정7급3, 전산7급1, 토목7급1, 건축7급1, 행정8급1, 기능10급1

※「전국체전준비팀」 인력 3명(행5급1, 행6급1, 행8급1) 전국체전기획단으로 조정

• 포항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63명 (119구조대, 일월파출소 포함)

- 소방정1, 소방령2, 소방경4, 소방위4, 소방장10, 소방교22, 소방사20

• 의성소방서 봉양·의흥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 32명

- 소방위2, 소방장4, 소방교13, 소방사13

• 포항북부·경주·안동·구미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인력 24명

- 소방령4, 소방경4, 소방위8, 소방장8 (소방서별 6명 - 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2, 소방장2)

• 소방본부(방호구조과) 소방헬기 조정·정비사 인력 4명

-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2

• 소방학교 교관단장 직급상향 조정 : 소방위△1 → 소방경1

• 소방서 과장·담당의 직급조정(영천·상주·의성·성주·칠곡·울진)

┌ 소방행정과장 : 소방경△6 → 소방령6

└ 담당(소방서별 2명) : 소방위△12 → 소방경12

• 화재조사요원 간부화(소방서별 1명씩)

- 소방장△5, 소방교△5, 소방사△4 → 소방위+14

• 본청, 사업소 직렬조정

- 행정6급△1 → 세무6급1(재정과)

- 기능9급운전원△1 → 기능9급기계원1(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기능10급조무원△1 → 기능10급사무원1(수산자원개발연구소)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현황 고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전)	등 록 (변 경) 연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6	새세대 육영회 경산시 지회	경북 경산시 삼북동 266-6번지	천영신	2005. 7. 19.	ㅇ 불우청소년돕기 및 장학사업 ㅇ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조성 ㅇ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국민복지를 위한 봉사	(053) 814-6990	가 정 복지과	변규 등록
273	(사)새벽을 여는아름 다운청소년 의모임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305 번지	이임수	2005. 7. 19.	ㅇ 청소년교육 및 상담 ㅇ 청소년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 함양 ㅇ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054) 336-1112	체 육 청소년과	변규 등록
32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청도군 지구협의회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99-1번지	정영백	2005. 7. 19.	ㅇ 사회봉사 및 구호사업 ㅇ 지역보건사업 ㅇ 응급구조사업	(054) 371-2242	자치행정과	변경 등록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2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포항 장량주공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 행 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사업지구 3BL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분 양 주 택	○ 대지 면적 : 45,549.0㎡ ○ 건축연면적 : 94,766.616㎡ ○ 건설 규모 : - 11~15층 11동 749세대	112,921,946천원 (주택기금 9,4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04. ~ 2009. 8.

6. 다른 법률의 의제

건축법 제8조,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지법 제36조, 도로법 제34조, 도시개발법 제3조, 제11조, 제17조, 제63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하수도법 제13조

7. 관계서류 사본은 포항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3호

보호수의 지정 고시

산림법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보호수지정 내역

소 재 지				수종	지 정 번 호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m)	소유자(관리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칠곡	동명	기성	343	느티	05-29-01	1	500	25	2.0	칠곡 동명 기성2리 343 새마을회 (동명 기성 694-3 기성2리 이장)	당산목
칠곡	동명	송산	1493	느티	05-29-02	1	300	25	2.0	국 유 지 (동명 송산 198-15 송산1리 이장)	당산목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4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 지방2급하천 용동천

2. 점 용 자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일원

나. 면 적 : 456㎡

4. 점용목적 및 사업개요

가. 점용목적 : 교량 가설

나. 사업개요

○ 신경지교 개체 : L=34.8m, B=12.5m

5.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5호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신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시행인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양수장 설치 등으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지 구 명 : 대신지구

나. 위 치 :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일원

다. 수혜면적 : 95.0ha(신규 ha, 보강 95ha)

라. 사업개요

○ 양수장 : 1개소

- 고양정 : 40HP×150mm×1대, 20HP×150mm×1대
- 저양정 : 40HP×350mm×1대

○ 집수암거 : 1개소(L=105m, D=1,350mm)

○ 송수관로 : 3조 3,123m

○ 용 수 로 : 1조 2,350m(신규 1,890m)

3. 소요사업비 : 2,512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05. 7 ~ 2007. 12

5. 사 업 효 과 : 증수량 145.8M/T

6.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6호

보안림의 지정 해제 고시

산림법제57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보안림의 해제사유 :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2.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임야소재지				지적(㎡)	보안림현황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종류	주 소	성명	
합계				3,388	3,388	3,388					

임야소재지				지적(㎡)	보안림현황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종류	주 소	성명	
칠곡	기산	평복	산55-4	129	129	129	0	수원1종	구미 형곡 187-1	장영근	산55-1에서분할
칠곡	기산	평복	산58-1	809	809	809	0		칠곡 왜관 왜관리252	이상윤	산58에서분할
칠곡	기산	평복	산59-3	1,516	1,516	1,516	0		구미 구평 808	장재율	산59-1에서분할
칠곡	기산	평복	산59-4	80	80	80	0		대구 달서 월성우방101/910	이수화	산59-2에서분할
칠곡	기산	평복	산59-5	792	792	792	0		대구 달서 월성우방101/910	이수화	산59-2에서분할
칠곡	기산	평복	산60-1	62	62	62	0		칠곡 기산 죽전 246	채병용	산60에서분할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7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 지방2급하천 운문천

2. 점 용 자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일원

나. 면 적 : 1,058㎡(일시점용 : 172㎡)

4. 점용목적 및 사업개요

가. 점용목적 : 교량 가설

나. 사업개요

○ 신원2교 개체 : L=114.0m, B=12.0m

5.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점용 : 공사완료시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05-228호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 지방2급하천 이소천

2. 점 용 자 : 상주시장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일원

나. 면 적 : 1,230㎡

4. 점용목적 및 사업개요

가. 점용목적 : 교량 가설

나. 사업개요

○ 화동1교 가설 : L=60.0m, B=11.0m

5.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5-383호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서 정한바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처 분 명 (사유)	영업정지기간
경북-0624	세림전기	추태호	영천시 야사동 274-2	영업정지1월 (기술인력미달)	'05. 7.27 - '05. 8.26
경북-0899	(주)정후	박성교	경산시 조영동 251-14	영업정지1월 (기술인력미달)	'05. 7.27 - '05. 8.26
경북-0993	(주)효성기전	이대성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29-1 306호	영업정지1월 (자본금 미달)	'05. 7.27 - '05. 8.26

경상북도 공고 제2005-38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동법 제72조 및 동 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민 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540015	인츠시스템 (안문기)	620809-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94-1번지	2005. 7. 22

경상북도 공고 제2005-387호

등록취소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역	
			위반행위	처분내용
정보통신공사업 제150533호	우신전기통신 (김수흥)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455-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2호 규정위반 (정보통신기술자위장취업)	등록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5. 7. 22.

3. 행정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2호

[유 의 사 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 공사업체에 대하여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즉시 경상북도청 정보통신과로 반납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처분으로 향후 2년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05-389호

측량업등록 공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 신규등록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업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일반 측량	06-05 -2015	(주)한일기술단	신동하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26-19번지 (☎054-383-7643)	2005. 07. 26.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05-52호

경주 도시계획시설(흥무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주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 : 흥무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도시과와 사업시행자가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주시 충효동 산7-1번지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경주도시계획시설(흥무근린공원)조성사업

나. 명 칭 : 흥무근린공원조성사업

3.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가. 부지면적 : 24,880㎡

나. 공원시설(조경, 내부도로, 주차장 등) 각1식

4.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04. 7. 26 ~ '05. 7. 25

나. 당 초 : '04. 7. 26 ~ '05. 12. 30

5. 연장사유 : 사업공기 부족으로 인한 연장

6.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주시 동천동 800

나. 성 명 : 경주시장

7. 사용(수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 소	성 명
경주시 충효동	1-1	임	909	727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2-1	임	502	360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3-1	임	496	416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4-1	전	307	160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5	임	132	132	경주시충효동	하재수 (미등기)
경주시 충효동	6-1	수	261	261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6-2	답	311	311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7	수	1,398	1,398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8-1	수	1,693	1,693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8-2	답	1,177	1,177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9-1	수	899	899		경주시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경주시 충효동	9-2	전	701	701	경주시북부동 112	김두만
경주시 충효동	10	수	1,600	1,600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11	수	268	268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12-1	임	23	23	경주시충효동	이근갑
경주시 충효동	12-2	철	162	144		국(철도청)
경주시 충효동	1794	도	600	198		국(건설부)
경주시 충효동	산4-2	철	397	92		국(철도청)
경주시 충효동	산4-3	임	893	842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산4-10	도	3,273	326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산7-1	임	24,000	654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산7-2	임	198	6		국(산림청)
경주시 충효동	산7-4	임	992	992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산7-5	임	4,661	4,661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산7-7	임	5,355	4,262		경주시
경주시 충효동	산7-28	임	1,190	55		국(건설부)
경주시 충효동	산220	도	397	397		국(건설부)
경주시 충효동	산221	도	198	127		국(건설부)
경주시 충효동	1927	천	33,095	1,848		국(미등기)

경주시 고시 제2005-53호

양남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양남 도시계획도로(소로3류6호선) 나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경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주 시 장

1. 사업 시행지 위치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05-27번지~416-3번지
2. 사업 명칭 : 나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3류6호선) 개설
4. 사업 규모 : 도로개설 L=160m, B=6m
5. 사업 시행자 : 경주시장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인가일로 부터 ~ 2007.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 성명 : 공람 장소에 비치
8.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람 장소에 비치

편입토지 조서

□ 나아리 도시계획 도로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단위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계		12필지		3,911	1,254				
1	양남면 나아리	405-65	임야	1001	624	㎡	양남면 나아리 411-1	김승환	
2	양남면 나아리	405-67	전	66	66	식	양남면 나아리 405-14	김 준	
3	양남면 나아리	405-68	전	4	4	㎡	양남면 나아리 405-15	이차임	
4	양남면 나아리	405-30	전	56	56	㎡	양남면 나아리 405	김승환	
5	양남면 나아리	405-40	임야	2316	36	㎡	한국수력원자력㈜		
6	양남면 나아리	405-85	전	2	2	㎡	양남면 나아리 405-15	이차임	
7	양남면 나아리	405-42	전	7	7	㎡	양남면 나아리 405-15	이차임	
8	양남면 나아리	405-86	전	79	79	㎡	양남면 나아리 405-15	이차임	
9	양남면 나아리	405-62	전	35	35	㎡	양남면 나아리 405-14	김준 외1	
10	양남면 나아리	405-44	임야	322	322.0	㎡		경주시	
11	양남면 나아리	416-9	대	21	21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72-3 환경주택402	정귀분	
12	양남면 나아리	416-10	대	2	2	㎡	양남면 나산리 415 나산그린빌라202	박정환	

경주시 고시 제2005-54호

서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면 도시계획도로(소로3류8호선) 아화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경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주 시 장

1. 사업 시행지 위치 : 경주시 서면 아화리 393-7 ~ 397-35번지
2. 사업 명칭 : 아화1리 소방도로(소로3류8호선) 개설공사
3. 사업 종류 : 도시계획도로 개설
4. 사업 규모 : 도로개설 L=60m, B=8m
5. 사업 시행자 : 경주시장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인가일로 부터 ~ 2007.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주소 · 성명 : 공람장소에 비치
8.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람 장소에 비치

편입토지 조서

□ 서면 아화1리 소방도로(소3-8) 편입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계	5필지			361			
1	서면 아화리	393-12	대	28	경주시 서면 아화리 393-3	김성태	
2	〃	393-7	대	36	경주시 서면 아화리 400-18	김용분	
3	〃	391-25	대	7	경주시 서면 아화리393-4	김덕줄	
4	〃	394-14	잡종지	157	경주시 서면 아화리 583-22	최대희	
5	〃	397-35	잡종지	133	경주시 서면 아화리 583-24	최대희	

공 고

경주시 공고 제2005-779호

공인신조 공고

경주시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주 시 장

1. 신조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사용개시일	비 고
민 원 실 경주시 장의인 전 용		2005. 7. 28. 09 : 00	

경산시 공고 제2005-4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산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소로 2류 108호선 · 171호선, 소로3류 244호선 · 395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경 산 시 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내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종류	명칭		주소	성명
경산시 정평동 155-4 번지 일원	도로	소로2-108호, 소로2-171호, 소로3-244호, 소로3-395호	○ 도로 B = 8m, L = 113.6m B = 8m, L = 58.8m B = 6m, L = 25m B = 6m, L = 95m ○ 우수관 - 흄관 D600㎜, L=280m - 맨홀(0.9*0.9) : 7개 ○ 오수관 - 주철관 D300㎜,L=168m - 맨홀(0.9*0.9) : 5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번지	주식회사 건영 관리인 권구민

청도군 공고 제2004-197호

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공람 공고

이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계획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일

청 도 군 수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청도군청 도시과

3.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가. 위 치 : 이서면 학산리 222-1번지 일원

나.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신설	학산 도로	중로2류1호선	이서면 학산리 222-1일원	중로	2	1	15m	720m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도시과(☎054-370-6341, 63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주 소 : 안동시 용상동 430번지 성 명 : 안동시장
점용면적 및 위치	면 적 : 시설물 357㎡, 일시 14,468㎡ 위 치 : 안동시 수상동 820-1번지앞
점용 목적 및 개요	목 적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개 요 : DCIP관(주철관)L=515.85m(D=500mm), 관보호공 L=329.76m(750×800mm), 호 안블럭 I형(A=26.54㎡), 돌망태 A=28.3㎡
점용기간	영 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 용 자 성명및 주소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성 명 :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장
점용 면적 및 위치	면 적 : 시설물 79㎡, 일시 594㎡ 위 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1024-3번지앞
점용 목적 및 개요	목 적 : 배수장 토출암거 설치 개 요 : 암거 L=40m(1.5×1.5)
점용 기간	허가 일로부터 5년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99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L=8.16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L=8.16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 시 일 시 : 2005. 8 . 1.

8. 비 고 : 국도7호선 영덕-성내간(성내측)도로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1부(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100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호선(기존국도)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L=0.92Km)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L=2.78Km)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L=1.31Km)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L=0.5Km)

경북 영덕군 병곡면 휘리(L=0.5Km)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L=0.19Km)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L=1.37Km)

경북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L=0.99Km)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L=0.01Km)

계 : (L=8.57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L=8.57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폐 지 일 시 : 2005. 8. 1.

8. 비 고 : 국도7호선 영덕-성내간(성내측)도로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폐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1부(게재생략)

연천군 공고 제2005-269호

공시송달 공고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마포교 접속도로확·포장공사, 노동~동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일

연 천 군 수

1. 공시송달내역

사업명	토지의 소재지			송달받을 자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마포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미산면 동이리 331-1	전	100	미산면 동이리 301	김창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산면 동이리 367-6(1)	전	388	미산면 동이리 304	김용식	〃	〃
노동~동중간 도로 확·포장공사	왕징면 동중리 산82-3(1)	임	1,82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96	황원주	〃	〃
	왕징면 동중리 산82-2(2)	임	59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96	황원주	〃	〃

사 업 명	토지의 소재지			송달받을 자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노동 ~ 동중간 도로 확·포장공사	왕징면 동중리 142-3	도	33	왕징면 노동리	이근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왕징면 동중리 133-3	도	126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757 강촌마을112-702	정철규	〃	〃
	왕징면 동중리 319-5(2)	도	86	왕징면 무등리	우문환	〃	〃
	왕징면 동중리 339-2	도	102	왕징면 무등리	우문환	〃	〃
	왕징면 동중리 334-2	도	377	전곡읍 전곡리 333	신영철	〃	〃
	왕징면 동중리 460	답	182	군남면 황지리 109-13	권성태	〃	〃

2. 송달내용

가. 협의보상기간 : 2005. 7. 19. ~ 8. 18.(30일간)

나.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다. 계약 및 지급조건 : 구비서류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3. 송달방법 : 읍·면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기타사항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와 절차 등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건설과 ☎031-839-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 쇄 처 : 홍익출판인쇄사(☎053-424-3588)
Webhard ID: hongik0088,P/W : 3560088
E-mail : ihongik@korea.com